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86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김재원·황운하·신장식

이해민・박수현・차규근

김선민 · 김준형 · 백선희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야간시간이나 주말시간에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며 공공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사유로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이용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신설).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 특정 단체나 특정 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 여야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약계층이 해당 생활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전체 운영 시간의 일정 비율을 취약계층에게 배정할 것
 -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지역 주민의 공평한 이용을 보장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기준의 적용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②(생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 장애인,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약계층이 해당 생활체육시설		
	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u>한다.</u>		
	1. 전체 운영 시간의 일정 비율		
	을 취약계층에게 배정할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과도		
	한 이용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		

(2)	(생	략)
(\mathcal{I})	(^1	<u> </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여	지역	주민의	공평한	이용
을 보장할 것			할 것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